

자동차 점검·정비명세서 (고객용)

Bluemembers

(영수증결용)

의뢰자 및 사업자 정보

Z15Z3720190829000006

차량 소유자	▶ 차량번호	77거8588	▶ 차종(차명)	카운티	▶ 주행거리	15,794 km
	▶ 등록년월일	2016-06-07	▶ 점검·정비 의뢰일자 2019-08-29 08:30			
정비 사업자	▶ 사업자등록번호	126-81-58856	▶ 정비업등록번호	01-4127-000436	▶ 업태	제조업/자동차엔진외
	▶업체명(대표자)	(주)동서울중기 김광남	▶ 주소	경기도 광주시 오포읍 오포로 281 (오포읍)	▶ 연락처	031-766-8826
	▶점검·정비 완료일자	2019-08-29	▶ 출고(예정)일자	2019-08-29	▶ 정비책임자	송충근

점검·정비 내역

추가정비 등의여부 : 동의/부동의

<무상수리>

NO	소 요 부 품	구 분	수 량	단 가	금 액
1	컨버터 어셈블리-캐털리틱	A	1		
2	씨비스 킷	A	1		
3	PTC 어셈블리-에어	A	1		
4	액추에이터-히터	A	1		
5	커버-디프로스트 유니트	A	1		

NO	작업내용	구 분	엔지니어	기술료
1	단축SCR교환, ECU/DCU업데이트		정인호	
2	PTC 히터 및 액츄레이터 교환		정인호	

「자동차관리법」 제58조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4조 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발급합니다

작성자

2019년 08월 29일
대표이사 김광남



부품▶	0	기술료▶	0	소계▶	0	VAT▶	0	총계▶	0
-----	---	------	---	-----	---	------	---	-----	---

1. 정비업자가 점검·정비의 잘못으로 다음 구분에 따른 기간중 발생하는 고장 등에 대하여는 무상점검·정비를 합니다. (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134조 제1항 제2호)

가. 차령 1년 미만 또는 주행거리 2만 킬로미터 이내의 자동차 : 점검·정비일로부터 90일 이내

나. 차령 3년 미만 또는 주행거리 6만 킬로미터 이내의 자동차 : 점검·정비일로부터 60일 이내

다. 차령 3년 이상 또는 주행거리 6만 킬로미터 이상의 자동차 : 점검·정비일로부터 30일 이내

2. 본 내역서는 2부를 작성, 정비 의뢰자에게 1부를 교부하고, 정비 사업자는 1부를 1년간 문서 또는 전산자료로 보관하여야 합니다.

3. '부품의 구분'란에는 다음에 따라 기재하여야 합니다.

가. 자동차 제작사 및 부품업체가 공급하는 신품 (자동차 제작사의 경우에는 사후관리용 보증부품 포함) : A

나. 재제조품 : B

다. 중고품(재생품을 포함합니다) : C

라. 수입부품 : F

* 재생정비한 원동기를 부품으로 사용하였을 경우에는 별제 제92호 서식의 원동기 재생정비 사실확인서를 첨부하여야 합니다. * 부기세포함, 상기금액을 정히 명수함/경리수납인 및 대표자 날인이 없는 것은 무효합니다.



자동차 점검·정비명세서 (고객용)

Bluemembers

(영수증결용)

의뢰자 및 사업자 정보

Z15Z3720190909000007

차량 소유자	▶ 차량번호	77거8588	▶ 차종(차명)	카운티	▶ 주행거리	15,947 km
	▶ 등록년월일	2016-06-07	▶ 점검·정비 의뢰일자 2019-09-09 08:30			
정비 사업자	▶ 사업자등록번호	126-81-58856	▶ 정비업등록번호	01-4127-000436	▶ 업태	제조업/자동차엔진외
	▶업체명(대표자)	(주)동서울중기 김광남	▶ 주소	경기도 광주시 오포읍 오포로 281 (오포읍)	▶ 연락처	031-766-8826
	▶ 점검·정비 완료일자	2019-09-09	▶ 출고(예정)일자	2019-09-09	▶ 정비책임자	송홍근

점검·정비 내역

추가정비 동의여부 : 동의 / 부동의

〈무상수리〉

NO	소요부품	구분	수량	단가	금액
1	가스켓-로커 커버	A	1		
2	캡사프트 어셈블리	A	1		

NO	작업내용	구분	엔지니어	기술료
1	캡사프트 교환 및 ECU업데이트		정인호	

「자동차관리법」 제58조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4조 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발급합니다

작성자

2019년 09월 09일
대표이사 김광남



부품▶	0	기술료▶	0	소계▶	0	VAT▶	0	총계▶	0
-----	---	------	---	-----	---	------	---	-----	---

1. 정비업자가 점검·정비의 잘못으로 다음 구분에 따른 기간중 발생하는 고장 등에 대하여는 무상점검·정비를 합니다. (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134조 제1항 제2호)

가. 차령 1년 미만 또는 주행거리 2만 킬로미터 미내의 자동차 : 점검·정비일로부터 90일 이내

나. 차령 3년 미만 또는 주행거리 6만 킬로미터 이내의 자동차 : 점검·정비일로부터 60일 이내

다. 차령 3년 이상 또는 주행거리 6만 킬로미터 이상의 자동차 : 점검·정비일로부터 30일 이내

2. 본 내역서는 2부를 작성, 정비 의뢰자에게 1부를 교부하고, 정비 사업자는 1부를 1년간 문서 또는 전산자료로 보관하여야 합니다.

3. '부품의 구분'란에는 다음에 따라 기재하여야 합니다.

가. 자동차 제작사 및 부품업체가 공급하는 신품 (자동차 제작사의 경우에는 시후관리용 보증부품 포함) : A

나. 재제조품 : B

다. 증고품(재생품을 포함합니다) : C

라. 수입부품 : F

* 재생정비한 원동기를 누름으로 사용하였을 경우에는 별제 제92호 서식의 원동기 재생정비 사실확인서를 첨부하여야 합니다. * 누가 세포함, 상기금액을 정히 명수함./경리수납인 및 대표자 날인이 없는 것은 무효합니다.